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기 상 산 업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848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조(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법</u> <u>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u> <u>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u> <u>“주관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u> <u>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u> <u>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u> <u>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u> <u>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충</u> <u>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u> <u>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u> <u>한다.</u> <u>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u> <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u> <u>되어야 한다.</u> <u>1. 연구개발 과제의 범위, 수행</u> <u>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u> <u>계획</u> <u>2. 연구개발비의 지급 · 사용 ·</u> <u>관리에 관한 사항</u> <u>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u> <u>사항</u> <u>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u> <u>용에 관한 사항</u> <u>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u>	<u><삭 제></u>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6조의2(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상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상근(常勤) 연구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는 것. 이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

<삭 제>

력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출 것

제7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

<삭 제>

<삭 제>

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상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③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협약을 해약하거나 기상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

원) ①・② (생략) <u>③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상사업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u>	원)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7448